

중국 핀테크 산업 중, 온라인 P2P대출 중개업에 대한 규제 동향

법무법인 세종 북경사무소

변호사 최용원

서언

최근 금융과 IT가 결합한 핀테크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P2P대출(peer to peer lending) 중개업은 인터넷 온라인 중개회사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려야 할 사람을 직접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통해 금융권의 전통적 대출의 대안으로 점점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2010년경부터 온라인 P2P대출 중개업을 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온라인P2P대출 중개회사(이하 “온라인대출중개회사”)란,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금전을 빌려주고자 하는 대주와 금전을 빌려야 할 차주간의 대출거래 연결을 중개해주는 회사를 말한다.

중국 환구망(环球网)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현재 온라인대출중개회사는 약 2600개에 달한다. 전년도에 비해 약 1천개가 더 늘어났다. 2015년도 온라인대출규모는 약 1만억위안(약 180조원)이고, 전년도에 비해 약 290% 증가하였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라인대출 중개업은 매년 급속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 성장 배경에는, 중국의 제도권 금융기관(은행 등)의 국영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대출편중이 심하여,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대출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온라인대출중개회사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온라인대출중개회사의 사기대출, 온라인 불법자금모집, 중개회사가 고객자금 가지고 도주하는 행위 등 크고 작은 폐단이 끊임 없이 발생하여 왔고, 사고발생 규모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는 온라인대출중개회사 이용자 보호를 위해, 2015년 12월 28일 <온라인차입대출정보 중개기구 업무활동관리임시방법(网络借贷信息中介机构业务活动管理暂行办法)> 규정(이하 “본 규정”) 초안을 발표하였다. CBRC는 2016년 1월 27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규정 수정을 거쳐, 정식규정으로 공포할 예정이다.

한국의 경우는 중국만큼 시장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온라인대출중개업이 성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중국과 같이 아직 온라인대출중개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는 상태인데, 대부업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편입시켜 온라인대출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법 등

이 거론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발표된 본 규정의 주요 내용 및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온라인대출 중개회사에 대한 영업 등록제도 시행

“회사 설립소재지 성, 특별시 정부 금융부서에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른 등록시 중개회사 자본금 한도에 대한 제한과 같은 중개회사 자산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중개회사의 영업등록이 중개회사의 신용도에 대해 증명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각 지방 정부 금융부서가 등록된 중개회사의 영업상황을 매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공시하므로, 사후 감독을 통해 우량한 중개회사와 그렇지 못한 중개회사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개회사 명칭

“중개회사 명칭에 “온라인대출차입정보중개(网络借贷信息中介)”라는 명칭이 반드시 들어 가야 한다.”

본 조항은 중개회사의 주영업이 대주와 차주 정보를 상호 이어주고, 중개해주는 회사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중개회사 금지행위

“온라인대출중개회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일명 12가지 금지행위)

- (1)중개회사 자신 또는 그 관계회사가 차입하는 행위
- (2)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주의 자금을 접수하거나 모으는 행위.
- (3)대주에 대해 담보제공 또는 원금이자 보장행위
- (4)실명등록 하지 않은 온라인 사용자에게 대출 선전 또는 추천행위

(5)대출행위

(6)대출 기한을 분할하는 행위

(7)은행금융상품, 증권회사 자금관리, 펀드, 보험 또는 신탁상품 판매행위

(8)다른 기관과 투자, 대리판매, 추천, 중개등 업무를 함께하는 행위

(9)차주의 진실성, 수익전망 등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과대선전, 하자 및 위험에 대한 은폐, 사기 행위

(10)증권투자용도의 차입 중개행위

(11)증권, 실물투자용도의 자금 모집행위

(12)기타 규정, 감독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본 조항은, 위 12가지 금지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라인대출중개회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플랫폼에서 순수히 대주와 차주를 연결, 중개해주는 기능만 해야 하고, 기타 자신이 직접 차입 또는 대출을 하는 행위라든가 자신의 금융 목적 또는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용자 실명등록

“온라인 대출, 차입 참여자는 중개회사에 실명으로 등록한 사용자여야 한다.”

본 조항은, 비실명 등록 사용자에게 대한 대출로 인한 사기행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위험통제

“온라인 대출금액은 소액위주여야 하고, 중개회사는 중개회사 자신의 위험관리능력에 따라 동일차주에 대한 단일 차입금액 상한, 차주 차입잔액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

본 조항은 중개회사가 자율적으로 리스크관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법규정으로, 동일 차주에 대한 차입금액 상한, 차입잔액 상한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중개비용수취

“차주가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는 대주에게 전부 귀속되어야 하며, 중개회사의 중개비용은 대주, 차주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대주 위험관리 및 평가

“온라인상에 반드시 온라인 대출의 위험 및 금지행위를 표시하고, 반드시 대주의 확인을 받는다. 대주의 연령, 건강상황, 재무상황, 투자경험, 위험감수성향, 위험감수능력등에 대해 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대주 구분 관리, 대출 한도 설정해야 한다. 평가를 거치지 않은 대주에게는 거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50대 이상 연령층의 중개회사를 통한 온라인 투자대출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온라인 대출 위험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지 않고 투자대출을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개회사로 하여금 대주에게 온라인 투자대출의 위험을 명확히 알리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고객정보보호

“중개회사는 업무과정중 획득한 대주, 차주의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고객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고객자금보호

“중개회사는 자신의 자산과 대주, 차주의 자금을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주, 차주의 자금보관기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본 조항은 대주, 차주의 자금을 중개회사와 협약을 맺은 은행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고객 자금의 안전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현재 중개회사 중 상위 극소수의 중개회사만이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차주 정보공시

“차입금액, 이율, 차입용도 및 상환방법, 차주의 연수입, 주요자산, 주요채무, 신용평가, 담보상황, 위험평가결과, 중개회사를 통해 차입한 다른 차입금 중 만기 미도래차입금 규모 등 공시해야 한다”

중개기관 경영관리 정보공시

“중개회사는 거래 웹사이트의 눈에 띄는 곳에 중개한 총 대출거래금액, 거래횟수, 대출잔액, 단일건 최대 규모 차입자의 차입잔액 비중, 10大 차주의 차입잔액 비중, 만기 초과 미상환 금액, 대신상환 금액, 만기 초과한 부실 대출 비율, 대주, 차주 숫자, 중개회사의 영업상황, 경영진 명단, 회계사무소의 감사보고서, 인터넷안전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 자금보관은행 및 신용보강기관 합작 상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결어

주지하다시피 중국경제의 경기 하강압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실대출 비율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 그 경우, 온라인대출중개회사를 통한 대출의 부실 가능성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어, 온라인 대출 중개업계를 지금과 같이 특별한 규제 없이 방치하면,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국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규정은 온라인대출중개회사에게 본 규정 시행 후 18개월의 과도기 기한을 부여하고, 온라인대출중개회사는 그 기한내에 본 규정 요구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대출 중개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으로는, 만약 본 규정을 엄격히 집행한다면, 현재 영업중에 있는 약 2600개의 중개회사 중 상위 100개 또는 200개회사만 생존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회사는 합병 또는 청산 등 절차를 거쳐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현재 영업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개회사들이 합법과 비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대출 중개업 본연의 업무를 넘는 영업을 하면서,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여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본 규정대로 영업을 한다면 수익을 내기 어려워 도태가 될 것으

로 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향후 본 규정의 시행 및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중국 핀테크 산업의 선순환적인 발전을 기대해본다.